

[별표 5] <개정 2018. 12. 11.>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구 분		등 록 기 준
1. 자본금		2억원 이상
2. 기술 인력	가.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기능사 1명 이상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3.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명 이상
4. 시설·장비		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사무실

비고

-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